

# 방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

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」 개정에 따른 방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, 실내장식물 등 설치 공사 시 방염대상 물품 및 권장물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■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 대상 확대
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) <시행 2019.8.6.>

#### 방 염 대 상

·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 (수영장 제외)

·노유자 시설

·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
·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·숙박시설

·방송국 및 촬영소

·11층 이상인 것 (아파트 제외) ·다중이용업소

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[추가]

·종합병원, 요양병원, 정신의료기관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의원 [추가]

### ■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장 대상 확대
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) <시행 2019.8.6.>

기존 방염대상물품		
법적 대상	·커튼류 ·카펫 ·벽지 (두께 2mm 미만) ·합판, 목재 ·암막, 무대막 ·간이 칸막이 등	
권장 대상	·침구류, 소파, 의자	

개정 방염대상물품		
법적 대상	·커튼류 ·카펫 ·벽지 (두께 2mm 미만) ·합판, 목재 ·암막, 무대막 ·간이 칸막이 등	
권장 대상	·침구류, 소파, 의자 ·천장,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(옷장, 찬장 등) [추가]	

### ■ 벌칙사항

-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: 과태료 200만원 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)
-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위반 시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)

문의처 :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🗗 02) 3141-3319 / 소방청 화재예방과 🗗 044) 205-7447



# 서대문소방서 예방과